

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외감제도 설명회

※ 설명 내용은 12월 결산기업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으며,
그 외 결산기업은 결산월에 따라 일정이 조정됨



회계관리국

1. 외부감사인 선임제도

1 감사인 선임 개요

- (감사인 선임기한)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선임(초도감사는 4개월 이내)
 - 단,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

[참고]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

- ① (상법)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(법 §542의11.①, 영 §37.①)
- ② (금융회사지배구조법) 다음 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 (법 §3.③.2, 16.①, 영 §6.③)
 - (제외 회사) ①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(상장사는 2조원) 미만 보험회사·여신전문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·금융투자업자, ②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

구 분	감사인 선임기한	2022년(선임기한)
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	<u>사업연도 개시 전까지</u>	<u>'21.12.31.</u>
②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	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	'22.4.30.
③ 이 외 외부감사 대상회사*	<u>사업연도 개시 후 45일</u>	<u>'22.2.14.</u>

* 법상 의무설치대상은 아니나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

I. 외부감사인 선임제도

- **(감사인 선임대상 사업연도)** 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(전기말 자산 1천억원 이상) 및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

- **(감사인 자격요건)** 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,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감사가능(감사반 불가)

- **(감사인 선임권자)** 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선임

구 분	감사인 선정*
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	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
②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	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

* 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

2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요내용 ①

※ 21.1.12.부터 개정 외감법 시행령이 시행 중이므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

구분	개정 시행령
구성원수	· 반드시 5인 이상(5~6인)
구성원	· 감사 1명 · 사외이사 2명 이내 · 기관투자자 주주의 임직원 1인 · 일반 주주 1인 · 1개 금융회사 임직원
외부전문가	· 대체 가능
약식위원회	· 5인 전원 동의시 3인으로 구성
참석	· 재적위원 2/3이상
승인	·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
유의사항	· 사내이사 불가 · 이해관계자 한도 준수 · 위원장 호선(사외이사 중 호선, 사외이사 없는 경우 감사 제외한 위원 중 호선)

2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요내용 ②

- (개요)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,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
 -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반드시 5명 이상*의 위원**으로 구성(최대 6인)
 - * 감사 1명, 사외이사 중 2명 이내,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인, 주주 1인(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, 임원 등 제외), 채권액이 가장 많은 1개 금융회사 임직원
 - ** 5명으로 구성시 사외이사는 1명까지만 선임가능
 - 다만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* 외부전문가로 충원가능
 - * 질병, 외국거주, 소재불명, 연락두절, 출석거부 등으로 해당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
- (약식 위원회) 감사인선임위원회 전원의 동의시, 위원장 포함 3인*으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가능
 - * 6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경우(사외이사 2명) 위원장, 감사, 사외이사로 구성하고, 5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경우(사외이사 1명) 위원장(사외이사), 감사, 기관투자자/주주/채권금융기관 위원중 1인이 참여
 -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

2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요내용 ③

□ (구성원 자격) 사내이사 불가, 각 이해관계자 정원 준수*

* 감사 1명, 사외이사 1명(6인 구성시 2명), 기관투자자 1명, 주주 1명, 채권자 1명, 또는 외부전문가

⇒ 감사 2명, 사외이사 3명(5인 구성시 사외이사 2명) 등은 구성원 정원초과로 불가

□ (대리인 참석) 주주, 채권금융회사, 기관투자자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

⇒ 대리인이 불출석 사유 및 대리인 증명서류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결권 행사(단, 전문가위원은 대리행사 불가)

□ (위원장 인선) 사외이사 중 호선(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 제외한 위원 중 호선)

⇒ 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으로 인선 불가

3 감사인 선임보고

□ (감사인 선임보고)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주주와 증권선물위원회(이하 '증선위')에 각각 보고해야 함

○ (주주에 대한 보고)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는 등 세가지 방식 중 선택

감사인 선임사실의 주주에 대한 보고·통지 방법

- ①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
- ②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
- ③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(감사계약 종료시까지)

○ (증선위 보고)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(금감원 위탁)에 전자보고*

*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<http://eacrs.fss.or.kr>)

감사인 선임보고 제출서류

- ① 회사가 작성한 선임보고 공문, ② 감사계약서 사본, ③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
- ④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의사록)
- ⑤ (감사인 변경 시)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

※ (회사의 증선위보고 예외) ①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, ② 중소형 비상장주식회사가 전기 감사인을 당기에 다시 선임한 경우, ③ 상장사·대형비상장주식회사·금융회사가 3개 사업연도 중 2·3년차 감사계약

※※ 감사인은 예외없이 감사계약체결 보고 필요

4 **감사 前 재무제표의 제출의무** ①

□ **(제출목적)**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 등의 재무제표* 작성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, 외감대상회사는 감사인에게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

*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자본변동표,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모두 포함

○ 외감대상회사 중 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(같은 날) 증선위에도 제출*해야 함

* 세부 자료들을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 기준으로 판단

□ **(증선위 제출방법)** 회사는 감사 前 재무제표를 아래와 같이 전자문서로 제출*

* Dart편집기를 이용하여 dsd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

구 분	제출방식
① 상장회사	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(http://filing.krx.co.kr)에 제출
② 대형비상장회사·금융회사	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http://eacrs.fss.or.kr)에 제출

4 기타(감사 前 재무제표의 제출의무) ②

□ (제출기한) 아래의 기한 내(외감법 시행령 제8조제1항)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

구 분		제출기한
개별(별도) 재무제표		정기총회 6주일 전 ¹⁾
연결재무제표	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	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²⁾
	K-IFRS 적용	정기총회 4주일 전 ³⁾

1)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

2)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,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

3)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

※ (참고) 2022년 제출기한 예시

정기총회 예정일	재무제표 유형	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기한	
'22.3.31.(목)	개별(별도)재무제표	정기총회 6주 전	'22.2.16.(수) 까지
	연결재무제표(K-IFRS 적용)	정기총회 4주 전	'22.3.2.(수) 까지

II. 외부감사인 지정제도

1 지정제도의 개요 ①

- (지정제도)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(금감원 위탁)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며, 주기적 지정(법§11②)과 직권지정(법§11①)으로 구분
 - (주기적 지정)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주권상장법인(코넥스 제외) 및 소유·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대상으로 도입
 -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(코넥스 제외) 및 소유·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
 - 다만, 지정대상선정일(9.1.) 현재 ①감리중이거나, ②과거 6년 이내에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받지 않은 경우, ③주기적 지정 시행('19.11월) 전 자유선임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주기적 지정을 면제
 - 한편, 대상회사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자산규모 큰 순서대로 일정한 수를 분산지정하며, 연기된 회사는 차기연도에 우선 지정

1 지정제도의 개요 ②

- (직권지정)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,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

구 분	직권지정 사유*
현행 유지	① 회사요청, ② 감사인 미선임, ③ 감사인 부당교체, ④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, ⑤ 감리결과 조치, ⑥ 관리종목 , ⑦ 상장예정법인, ⑧ 다른 법률(상호저축은행법 등)에 따른 지정요청, ⑨ 횡령·배임 발생 , ⑩ 주채권은행 등의 지정요청, ⑪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등 외감법령을 위반한 경우(경미한 위반 제외)
신 설	① 재무제표 대리작성·회계자문 요구, ② 3년 연속 영업손실 or 負의 영업현금흐름 or 이자보상배율 1미만 , ③ 투자주의 환기종목 (단,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는 제외), ④ 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, ⑤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, ⑥ 3년간 최대주주(2회↑) or 대표이사(3회↑) 변경 , ⑦ 지정기초자료 제출의무 위반

* 볼드체는 주권상장법인에만 해당하는 지정사유

2 지정시기 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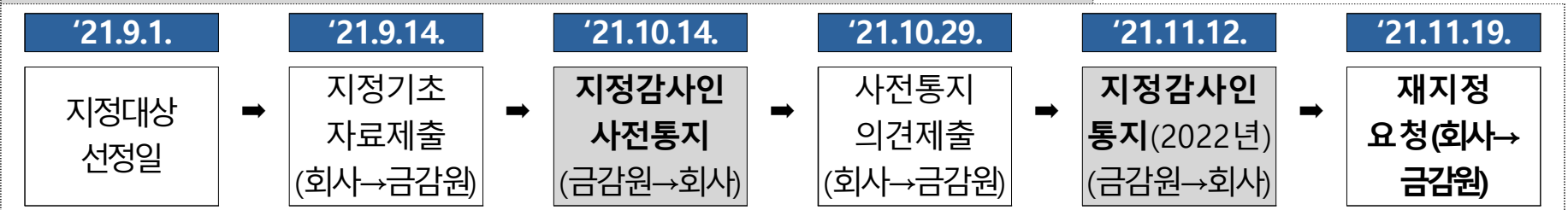
□ (주기적 지정)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*('21.9.1.)을 기준으로 대상회사를 선정

* 지정대상선정일 : 지정대상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(외감규정 §12조⑧)

○ 10월 14일*(본통지 4주전)경에 회사와 감사인에게 지정 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하고,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검토·반영하여 11월 12일*경에 본통지(지정통지)

* 사전통지 및 본지정 결과가 확정되는 날이며, 등기 발송 등으로 2~3일후에 지정통지 수령 가능

[참고]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2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일정



2 지정시기 ②

□ (직권지정) 일부 예외적인 지정사유*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차기연도(사업연도 개시 전)를 지정

* 상장예정법인(9월말까지 요청), 회사요청(감사인 선임기한 내), 감사인 미선임, 감사인 부당교체,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(상장폐지요건에 해당) 등의 경우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지정

○ 직권지정 사유별로 지정대상선정일에 대상회사를 정한 후, 다음달 14일 경에 사전통지하고, 의견을 검토·반영하여 사전통지일로부터 4주 후 본통지

주요 지정사유	지정대상선정일	실제 사례
가. 상장예정(9월말까지 요청)	지정요청일	8.5. 요청시: 사전통지 9.14. → 본통지 10.14.
나. 감사인미선임	6월 초일	6.1. 기준 : 사전통지 7.14. → 본통지 8.17.
다. 감사인 부당교체, 관리종목(비적정*)	감독원장 인지일	7.10. 인지시: 사전통지 8.17. → 본통지 9.14.
라. 감리조치, 재무기준, 관리종목(비적정외) 등	9월 초일	9.1. 기준: 사전통지 10.14. → 본통지 11.12.

* (감사의견 비적정&상장폐지 요건) 거래소가 금감원에 지정대상 통보시 해당 사업연도부터 지정

3 지정기간

- (주기적 지정) 주권상장법인 등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되는 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게 됨
- (직권지정) 新외감법 시행으로 지정기간이 1 ~ 3개 사업연도로 늘어남
 - (주기적 지정대상회사*) 3개 사업연도
 - * 유가증권·코스닥시장 상장사, 소유·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
 - (주기적 지정대상회사 外) 1개 사업연도(다만, 직전 사업연도에 법규위반 사유로 지정받은 회사가 당해연도에 동일한 법규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지정받는 경우:2개 사업연도)

[참고]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추가 발생시

- ◆ '20~'22년까지 주기적 지정을 받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A가 '22년에 직권지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
→ 상장사 A는 주기적 지정대상이므로, '22년에 직권지정 사유해당시 '24년까지 3년간 지정받아야 하므로 주기적 지정 기간('20~'22년)과 합하여 '20~'24년까지 5년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됨

4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현황 제출 ①

- (제출대상) 외감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모든 대형비상장주식회사(소유경영 분리여부 무관)
 - (제출방법)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 시스템(<http://eacrs.fss.or.kr>)에 전자제출
 - (제출서류) 외감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①공문, ②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, ③대표이사 변동현황, ④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⑤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
 - (매뉴얼) 금융감독원 회계포탈(<http://acct.fss.or.kr>)에 상세작성 매뉴얼을 게시
- ※ 아래 내용들은 12월결산기업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으며, 그 외 결산기업은 결산월에 따라 일정이 조정됨

4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현황 제출 ②

- (2.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) 보고시점 기준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*의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기재

* 직전 사업연도가 '21.1.1.~'21.12.31.인 회사의 경우 '21.12.31.기준 지배주주 현황을 기재

- (2-1) 지배주주*에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회사 지배주주의 지배주주명, 주식수 및 지분율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, 2-1, 2-2, 4-2 동일)을 기재

*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“지배주주등”을 의미론

- (2-2) 특수관계인에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*의 주주명, 지배주주와의 관계, 주식수 및 지분율을 기재

*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“특수관계에 있는 주주”를 의미

- (4.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해당 여부) (4-2) 지배주주(2-1) 및 그 특수관계인(2-2)의 지분율 합계, (4-3) 회사 대표이사, (4-4) 소유·경영미분리 해당 여부(①,②,③ 모두만족*)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기준을 기재함을 유의

* ①대표이사가 당해 회사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상태에서 ②지배주주 본인이거나 특수관계에 있으며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합계가 50%이상인 경우 “소유경영 미분리”에 해당

5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제출

(대상) 주권상장법인, 소유·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* 및 회계법인

*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현황 제출 시 (4-4) 소유·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경우 사업 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(9.1.)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

(시기) 사업연도 시작후 9개월째 초일부터 2주이내(12월결산: 9월1일 ~ 9월14일)

(방법)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<http://eacrs.fss.or.kr>)에서 제출*

* 제출완료후 수정 필요시 처음부터 재작성하여야 하며, 다수건을 제출한 경우 기한내 최종 제출된 자료를 지정기초자료로 간주할 예정

(매뉴얼) '21.8.31. 금융감독원 회계포탈(<http://acct.fss.or.kr>)에 상세한 작성 매뉴얼을 게시할 예정

※ 아래 내용들은 12월결산기업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으며, 그 외 결산기업은 결산월에 따라 일정이 조정됨

II. 외부감사인 지정제도

- **(합병 분할 내역)** '20.9월 이후 합병·분할기일, 회사명(금감원 고유번호)을 포함한 합병·분할 세부 내역
- **(연속감사 당기 차수)** '21 사업연도의 연속감사 차수(1년/2년/3년)
- **(과거 6년내 감리 여부)** 감리중, 무혐의, 조치, 해당없음
 - '15.9월 이후 감리 무혐의 종결(조치)일, 감리기관
- **(지배주주 지분율)** '20년말 기준 지배주주*1(특수관계자*2 포함) 지분율(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), 발행주식 총 수, 지배주주(특수관계자 포함) 소유주식 수, 지배주주명, 특수관계인 수(당해 회사 주식 소유자)
 - *1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"지배주주"를 의미
 - *2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"특수관계에 있는 주주"를 의미
- **(기타 추가 제출 내역)** '21.9.1.현재 소유·경영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,
 - ① 해소사유,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 현황자료('21.9.1.현재) 및
 - ③ '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'('21.1.1.~'21.9.1.)를 첨부

감사합니다.